



2024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6.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6. 7.(금)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1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노승용 위원, 이현수 위원, 이한재 위원, 이단비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 2024-34 : 서울시의회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 2024-3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 처리(버스정책과-35858, '19.11.20.) ○ 2024-36 : 동북선 경전철 공사자료 ○ 2024-37 : 감사 관련 서류
심의결과	 ○ 2024-34 : 부분인용 ○ 2024-35 : 기각 ○ 2024-36 : 부분인용 ○ 2024-37 : 기각

1. [의안번호 2024-34] :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4호 의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보내주신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비공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비공개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 팀장

경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시의원들 결석현황하고 대장을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정보공개법 5호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원래 6호로 사유를 달아서 비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부터 의원님들 청가서하고 결석계에다가 본인이 결석계를 내실 경우에 공개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 의원님께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해도 되겠다그런 의사를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비공개해야 되겠다 의원님이 그렇게 표기하면 저희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개인 사생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를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000 위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여기 내용은 지금 법원에서는 청가서와 결석계를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사항 아닌가요?

○ 000 팀장

그래서 제가 이거 판결 나온 후부터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식에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를 거기다 체크하게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공개해도 된다 그러면요.

○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공개 의사를 밝히고 계시는 건가요?

○ 000 팀장

지난 회기 때부터 공개 여부 서식을 넣어서 한 분이 지금 공개해도 되겠다 해서, 그분은 시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은 현재는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비공개로 체크를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과거 사례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마 근거도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과 이것은 어떤 다름이 있나요?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 아닐까 해서요.

○ 000 팀장

그거는 각 지방의회별로 좀 다르겠지만요.

○ 000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름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000 팀장

현재는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대다수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과거에 일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 000 팀장

네.

○ 000 주무관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청가결석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 000 위원

거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나가고 있나요?

○ 000 주무관

청가랑 결석계 횟수하고 예를 들어 백분율로 해서 환산된 청가와 결석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와 다 나와 있습니다. 횟수도 나와 있습니다.

○ 000 위원

현황은 나가 있는 거고,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제공,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팀장

의원님께서 공개를 원하시면 그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공개 원하지 않는데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000 팀장

의원님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000 위원

네.

○ 000 팀장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 000 위원

그건 일단 다른 문제로 하고요.

○ 000 팀장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만약에 의원님의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개인정보 다 빼고 그냥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본회의다 무슨 상임위원회다 이런 정도만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청가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사유 부분만 남겨서 공개하는 것.

○ 000 팀장

사유 부분만 공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 000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그 청가서나 결석계를 보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어떤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사유 정도는 공개해도 어떤가 하는 의미지요.

즉 행정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그런 사유를 국민들이,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법원의 판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사유만 이렇게 밝히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거지요.

○ 000 팀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성함하고 핸드폰번호, 상임위, 본회의 그거 빼고 사유만 공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000 위원

사유만 알려주면 통계는 청구인께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매치를 시키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사유 정도만 이렇게 공개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거지요.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은 잠깐 나가 계시고, 대기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 의견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제가 처음 내용 살펴보고 또 오늘 여쭤보고 한 것의 전체적인 부분은 개인정보를 빼고 사유 부분은 공개하자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아까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듯이 사실 서류에서는 안 나타나 있고, 오늘 처음 말씀해서들었는데요. 의원님이 공개를 원한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를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요. 혹시 그런 걸 비공개로 체크를 하셨는데 저희가 공개해도 된다 이랬을 때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그 부분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 그걸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개인정보를 빼고 사유만 공개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 000 위원장

소속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사유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000 위원

네. 사실 굳이 소속까지 나오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원님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약간의 시민들의 견제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사유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 000 위원장

대부분 또 일신상의 사유 그런 내용들도 많기는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있 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부분인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좀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불출석 사유... 분명히 개인정보로서의 성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서울시의원님들이 일신상의 사유로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도대체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하신 것인지 알수 없게끔 그렇게 쓴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신병치료라든지 또 가족의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듭니

다. 그래서 이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행정법원 판례가 있고요. 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지금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불출석한 경우라면 그 사유, 또 주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거에서 사유도 공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가 봐요. 일단 저는 이 서울시 결석하신 의원 이름은 저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불출석 사유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개하신 선례는 있습니다마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질이 저는 인정된다고 보아서요.

결론에서는 주심위원님과 같이 부분인용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름하고 소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결석한 회의, 그래서 본회의인지 뭐 상임위인지 이런 거는 공개하되, 다만 그 사유는 비공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장

부분인용 결정을 하되 주심위원님 의견과 다르게 오히려 이름과 소속은 밝히고 사유는 비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는 옳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 니다.

○ 000 위원

저도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청가서하고 청가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내용인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이거나 병가 이런 내 용들만 있어서 의원 이름하고 청가서 부분을 다 공개를 해도 개인신상에 크게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청가서 내용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사유를 자세하게 쓴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비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 병가 이런 정도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요. 병가 아니면 뭐 공가 이 정도는 공개를 해 주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부분인용으로 보면서 좀 범위만 다를까요?

○ 000 위원

부분인용인데 의원 이름도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써냈으면 그건 비공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써내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인지 병가인지 정도만 했으면 그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부분인용이기는 한데 지금 이름, 소속 상임위도 다 공개하고, 사유를 아까 비공개하자고 그러셨는데 사유 중에서도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좀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병가 중에 이런 일반적인 것은 공개를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분이 부분공개인데 견해가 전부 다 각양각색이라서 오늘 굉장히 난감합니다. 일단 제가 다 듣고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렇게 안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비공개가 가능한, 특정 이렇게 업무수행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또 개인의 성명과 직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름이나 소속 이런 거는 공개를 해도 되지만, 특정 그 사유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비공개가 돼야 되는 너무 사생활적인 게 그런 게 아니면 공개를 하고, 만약에 너무 사생활이다 이러면 비공개로 가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이름과 소속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 000 위원

그것까지는 공개하지만, 너무 사생활의 경우는 비공개를 하고요. 그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이다, 일신상의 사유다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000 위원장

일단 지금 주심위원님은 개인정보에 대한 좀 우려가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세분 위원님은 어쨌든 이름과 소속 상임위를 공개하는 게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유에 있어서는 한분은 개인의 영역으로 비공개, 나머지 두분은 일반적인 사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공개를 하는데, 다만 좀 개인적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런 일반적인 일신상의 사유나 병가 정도로 해서요. 또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서 국민과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판례에도 그러한 취지로 나온 거라서 공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또 사유도 일반적인 사유라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분인용 결정에 네 분이 다, 그러한 의견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름과 소속 상임위 그다음에 사유에서 일반적인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병가 이런 내용들만 공개하고, 좀 구체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유 이거는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거는 제외해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인용으로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 결정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공개되는 부분은 이름하고 소속 상임위. 그리고 사유는 아주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일신상의 사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병가 일반적인 사유 이런 것 등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 렇게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노출하지 않고, 그 사유도 아주 보편적인 사항

만 알려드리고요.

또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속 상임위와 성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 판결 도 서울시와 관련된 판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감안하셔서 성명, 소속 상임위, 아주 일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4-34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3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 처리 (버스정책과-35858, 2019.11.20.)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5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대상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구인께서 공개해달라고 하는 자료가 운수회사 양도·양수건 관련한 신고서를 공 개해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맞습니까?

○ 000 주무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법인 간 양수도 계약금액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 000 위원

특히 법인 간의 양수도 금액을 공개해달라.

서식을 보니까 양도·양수할 때 이 신고서에 액수를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액수가 이 사안에서는 얼마였지요? 00원이 맞나요?

○ 000 주무관

해당 사안에서는 적시된 내용대로 00원이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류를 보니까 회사끼리 양도·양수하는 거인데요. 지금 이름도 비슷하고요. 양도·양수 기업 이름이 비슷하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00기업, 00운수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사들을 보면 가족관계인 것 같고, 양도·양수 회사의 동일인이, 법인은 별 개지만 동일인이 이사인 것 같은데 맞나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일단 대표자는 동일인이기는 하지만 법인 간 전부 양수도계약 건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왜 그러신 거예요? 여기 양도·양수건이 조금 특이하다 싶어서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자기가 회사 또 만들어서 또 양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 000 주무관

극히 드문 사례고요. 아마 내부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판단이 된 거는 아니니까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양도가격이 00원인데요. 지금 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받아서 하시고 계신 이사업의 규모를 보면 번호가 있고, 사업규모로는 한 버스 0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00원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팔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 000 주무관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동일기업 대표 사안에서 이루어진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통상적으로 기존에 다른 인수법인 간 양수도 액수를, 그 사례를 비춰보건대 훨씬 많은 금액에, 높은 금액에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공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운수법인 간에,

○ 000 위원

팔고 사는 사람들 마음이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이의신청 관련해서 이게 기각돼야 된다는 의견 소관부처에서는 주셨고, 관련해서 더 추가로 좀 어필하시고 싶은, 이렇게 더 강하게 좀 호소하시고 싶은 그런 비공개 사유는 없을까요? 그냥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 000 주무관

법적 사유는 법인의 경영상 그거 외에는 별도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법인끼리 사고파는 건데요. 이 법인 등기사항에 이런 거 적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 000 주무관

이 내용,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내용이면 당연히 일반 제3자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알 수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일종의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리처분은 하실 때 혹시 다른 법령이나 이렇게 위반사항 같은 건 전혀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 000 주무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상의 사안은 다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서 확인을 한 것까지는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것까지는 내밀하게 판단은 좀 어렵습 니다.

○ 000 위원

주무관님,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총회의결서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저는 담당부서 의견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가격 문제인 건데 청구인께서 이걸 특히 알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전형적인 경영상의 보호받아야 될 비밀이 아닐까 해서 저는 기각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주심위원님과 같은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집계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에 5명의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5호**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7호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아서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4-36] : 동북선 경전철 공사 자료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6호 도시철도사업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혹시 지금 청구인의 목적이 안전과 휴식권이고 이게 어떻게 교대를 할 때 측정이 돼 있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붙임3이 공개가 될 경우 이렇게 뭔가 예상하시는 문제가 있나요?

○ 000 주무관

동북선은 일단은 민간투자사업이고요. 그다음 설계하고 시공을 민간사업자가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영업과 비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붙임1이나 2 같은, 청구인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구하셨는데 그중에서 붙임3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에 품을 어떻게 가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내용이 어떻게 노무비가 설정이 됐는지가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될 경우 뭔가 피해, 예상하시는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000 팀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로 민간사업자의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증거자료로 제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품세를 적용할 때 몇 년도 품세를 적용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아져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추후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현재 지금 설정돼 있는 이 노무비 측정 기준은 몇 년도인가요?

○ 000 팀장

품세 같은 경우는 2010년 품세입니다.

○ 000 위원

2010년이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

그러면 그게 2010년으로 설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000 팀장

동북선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고, 2008년에 했던 경남기업이 포기하고 다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다 보니까 2010년 품세를 적용을 했고요.

물론 뒤에 실시설계할 때는 불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다 태웠지만 이런 상세한 것까지 다 내용을 오픈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노무비 정도만 공개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 000 팀장

그러니까 그 노무비를 공개를 할 때 몇 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공개하냐 그 부분이 부 담스럽다는 겁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분이 여기 노조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누가 청

구했는지 알고 계세요?

○ 000 주무관

터널 쪽의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거기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신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통화는 한 두 번 했는데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사업자분하고 청구인 노조분하고 소송이 있는지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통화해 보면 이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현장이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향후에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혹시 만약에 2010년 기준으로 이렇게 품세가 책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 000 팀장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추가질의가 들어오는 게 왜 2010년 품세를 적용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실시설계가 승인이 됐으니 그런 과정을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맞춰져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러다 보면 기업정보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2010년 기준에 따른 거는 그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거지요?

○ 000 팀장

전혀 없습니다.

○ 000 주무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품셈은 돼 있지만 물가정보를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장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해서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현재 공사비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문제제기나 이렇게 분쟁 같은 게 있지는 않았던 건가요?

○ 000 팀장

현재까지 동북선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 지금 비공개자료 중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3개 중에 지금 궁금해하는 게 터널공사 야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논리로 공개하 는 게 영업상 비밀에 지금 저촉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 000 팀장

그런 논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외에 추가질문 있으신지요?

없으면 일단 저희가 의결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이게 안전과 휴식권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렇게 청구를 한 것에 대비해서 자료가 과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교대, 3교대 적정한 보수 이런 부분은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분공개로 하되, 붙임3 정도는 공개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해 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다 듣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붙임3 자료, 요청했던 또 가장 관심을 가진 이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 000 위원

데이터가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이게 개인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회사 자료인데, 이거를 어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아마 제출했던 자료 같은데요. 서울시가 개인의 동의 없이 이걸 공개를 하는 거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사항에 해당이 돼서 비공개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지금 주심위원님께서 붙임자료3 얘기하셨는데요. 3도 이질적인 두 개의 정보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붙임3에 64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는 혹시 건교부 무슨 고시 이런 규정 지금 따온 거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주무관님께 여쭙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도될까요?

○ 000 위원장

맞습니다. 붙임3 자료 보시면요.

○ 000 주무관

위원님, 64페이지 이 자료는 품셈자료로 이미 공개는 돼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표준품셈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 000 위원

이거 만든 주체가 국토부가 만든 기준 같은 거지요?

○ 000 주무관

국토부에서 만든 기준이라고 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여러 작업 현장에서 품셈을 할 때 가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인 것 같으니까요. 위험한 일이나 더 힘든 일을 할 때는 가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할증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붙임3 중에서도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정보는 이미 다 기지(旣知)에 알고 있는, 아시는 정보여서요. 이거는 비공개할 이유가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뒤 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그런 정보로서 성질이 좀 있다. 그래서 앞 페이지는 저는 공개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뒤 페이지는 공개가 조금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붙임2도 그렇습니다. 붙임2도 이렇게 쭉 보시면 페이지 393부터 토목 부분에 여러 가격 기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이게 9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뒤에는 이 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라서 이 앞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여튼 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거라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붙임1은 반면 여러 가지 기업의 비밀적인 요소가 좀 들어 있어서 1은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좀 나누어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부분인용 의견이신데요. 붙임2 자료 중에 1에서 9 정도는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 공개해도 무방하고, 10페이지 이하 쪽은 영업상 비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붙임3도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는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 이거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영업상 비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는데요.

○ 000 위원

저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비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분 공개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 000 위원장

부분인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붙임2, 붙임3 중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는 공개하고, 나머지 영업상 비밀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중에서 네 분이 본 안건을 부분인용하면서 붙임2에 1에서 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 그거는 공개해도 무방할 것 같고, 10페이지 이하는 영업상 비밀이라서 비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붙임3의 경우에도 첫 페이지는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 이거는 공개해도 무방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영업상 비밀과 관련돼 있어서 비공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6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번호 2024-37] : 감사 관련 서류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7호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소관부서에서 일단 처음에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 중에 본인의 진술 부분은 공개를 하셨고, 본인의 진술 부분이 아닌 피해자의 문답서와 참고인의 진술서, 그리고 성희롱·성 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신 게 맞으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비공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항, 그래서 여기서 다른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를 하신 게 맞으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심의의 중립성을 위하여 회의록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거 비공개자료 중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되면 추후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기가 어렵고 외부에 어떤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피해자의 문답서의 경우에는 이 청구인의 주장은 문답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소청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반박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청심사에서 다툴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검토자료 일부를 보니까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이런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사례를 아세요?

○ 000 주무관

저도 그 행위자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첨부했던 광주지방법원인가요? 그 판례 말씀하신 게 맞으실까요?

○ 000 위원

맞습니다.

○ 000 주무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 000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피해자 진술을 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우리 사안하고 다른 점은 우리 사안은 소청심사를 하는 청구인이고, 이 판례 사안은 소청심사를 지나서 행정소송을 하는 청구인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소송에 가면 법원의 명령으로 이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소청 과정에서는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자료에도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사과정에서 알 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 참고인은 본인들은 철저한 비공개 와 비밀유지를 전제하고서 참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드릴 취지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어차피 공개가 될 건데 그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비공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거 를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제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징계처분은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소청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나요?

○ 000 주무관

모든 징계절차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때문에 지금 소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차피 될 건데 이미 결정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청 단계에서 이게 비공개돼야 되는 어떤 차이나 다른 이유 가 뭐가 있을까요?

○ 000 주무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정말 개인적인 영역의 이슈들이든가 또 진술들이 당연히 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절대 그것을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고요.

심의위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심의의결의 과정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사들을 나누고 개 진하고 이런 과정들이 위축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현 저한 저해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질문 다 드렸고요.

소관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은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000 위원

이게 어차피 행정소송 가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인데 조사는 다 끝났고, 징계가다 된 거라서요.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인 가해자가 소청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게 맞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인의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직접 얘기를 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한 진술 중에 가해자와 직접 주고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가해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에 피해자 다른 사람이랑 한 얘기라든가 피해자가 혼자서 생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용, 가해자와 둘이서 한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부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인용 의견이시고, 공개될 부분만 말씀 바랍니다.

○ 000 위원

공개될 부분은 세 가지 중에 피해자 문답서 중에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 그다음에 가해자와 둘이서 있었을 때 있었던 일,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고요. 그 외 부분은 전부 다 비공개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주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살펴봐주셨기 때문에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해당 지금 비공개자료 문답서상에 잘 구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만 해 주시면 혼란의 여지 없이 부분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답서에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돼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이미 가해자도 알고 있는 팩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서요.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은 굉장히 존중하는데요.

다만 지금 피해자가 지금 아까 소관부서 담당하신 분들과 모두 다 이렇게 지나치게 스 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소송에 가면 공개된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 000 위원장

기각 의견이신가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아마 피해자를 좀 고려한 의견이시고요. 세 분은 일단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알려진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사실 이게 노출되는 게 염려가 좀 되기는 하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는 기각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의견은 부분인용 결정이고, 피해자 문답서에 관한 부분 중에서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고 정리를 해서 이 공개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지금 공개할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서가 지금 총 11페이지입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나하나 문장을 보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원래 공개와 비공개가 명확히 구별될 때는 저희가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문장을 보고 살펴봐야 되는

데 과연 피해자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소청심사와 관련된 자신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데 본인도 알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공개돼서 행정소송을 만약에 소청심사에서 징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갔을 때 이내용이 다시 거론되고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결국 피해자와 지금 이 신청인사이에 분명히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 000 위원장

의견을 조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 의견을 주시면 조금 생각이 달리 판단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지금 조율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저희들은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심위원님이 명확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럴 수 있을 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는 나와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팩트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피해자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가해자하고도 다른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그래서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우선 기각이 지금 세 의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각 사유로 이렇게 봐야 될 특별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지금 규정들이 다 비공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1호의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청과 관련해서 인사관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아까 그 구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부분도 침해될 우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공개할 때 따르는 약간 염려가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런 생각입니다.

○ 000 위원

그런 취지에 동의합니다. 구분하기가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기각 의견을 주셨고요.

○ 000 위원

주심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해 주시니까요. 저도 많은 위원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금 더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기각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사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7항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다 망라해서 여기에 따른 5호 사유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는 되는 것이 사생활 비밀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비공개 사유로 고려는 할 수 있는데, 이미 1호나 5호 등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